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53
----------	-------

발의연월일 : 2023. 12. 18.

발 의 자 : 류호정 · 배진교 · 이은주
심상정 · 장혜영 · 강은미
강성희 · 용혜인 · 김주영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소위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내지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해당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3. 채무자가 「상법」 제517조의2에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로서 「상법」 제517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3. 채무자의 이사
4.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5.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신청 사실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안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 제1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2. (생 략) <u><신 설></u>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채무자가 「상법」 제517조의2에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로서 「상법」 제517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3. 채무자의 이사 4.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5.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
② (생 략) <u><신 설></u>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237조(가결의 요건) (생략)
<신설>

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해당 규정에 의하여-----

-----.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 ----

--. 다만, 제3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신청 사실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안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7조(가결의 요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3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 제1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
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
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